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민식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26호, 2023. 7. 11. 공포) 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됨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**법 제7조제1항**”을 “**제1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**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**”를 “**제1항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**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**”을 “**제4항에도 불구하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**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**”을 “**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(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90으로 한다.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의료지원) ① (생 략)	제9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참전유공자는 <u>법 제7조제1항</u> 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.	② -----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</u> 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공자”는 “참전유공자”로 본다.	③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<u>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	④ <u>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(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90으로 한다.</u>
1. <u>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</u>	

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
이 부담하게 될 비용(같은 표
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
제외한다)의 100분의 90

2.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
하는 경우: 참전유공자 본인이
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
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
로 정하는 감면비율

⑤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75
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
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
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
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
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.

⑥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
공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
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진료를 받
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
처방전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20
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
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국가
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
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-----

-----.

⑥ ----- 참전유공자가 법 제7
조제2항-----

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
이 부담한 약제비용에 대하여
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 금액은
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해당
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<신 설>

⑦ (생 략)

-----.

-----.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
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
에서의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
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
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
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
담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른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1